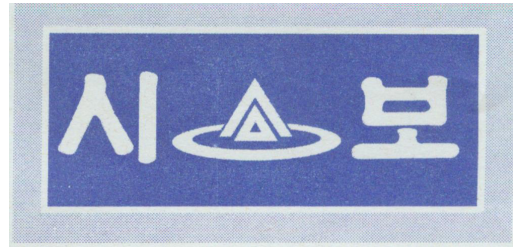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02호 2013. 7. 15.(월)

【조 례】

제871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872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873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19
제874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875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876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43
제877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	89

【규 칙】

제44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47
제44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9

【훈 령】

제21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담당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정	179
-------	---------------------------------	-----

【고 시】

제2013-89호	시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93
제2013-9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205

【공 고】

제2013-956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6
제2013-974호	「공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1
제2013-975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21
제2013-984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40

회 람							
--------	--	--	--	--	--	--	--

공주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 7. 5.)에서
의결된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71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조금”이라 함은 시이외의 자가 행”을 ““보조금”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자가 수행”으로,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을 “사업을 시가 공익상·시책상 필요에 따라”로, “자금”을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
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사업”이라 함은”을 ““보조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사업자”라 함은”을 ““보조사업
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 것으로서”를 “따른 것으로써”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산출기초”를 “산출기초”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수행으로 인하여”를 “수행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를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결정함에 있어서”를 “결정할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 할 때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을 정산할 때는 카드사용내역서 원본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결정함에 있어서”를 “결정할때”로,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을 “덧붙인 경우에는 덧붙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의하여 사전에”를 “따라 미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정변경에 의한”을 “사정변경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변경으로 인하여”를 “변경으로”로 한다.

제11조 중 “의거한”을 “따른”으로,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그보조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를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시장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에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운영과 관련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중 “집행을 하기”를 “집행을”로, “인정할 때는”을 “인정하면”으로, “받은자에 대하여”를 “받은자에게”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또는 그”를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u>뜻은</u> ----- -----.		
1. “보조금”이라 함은 시이외 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 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u>자금</u> 을 말한 다.		1. “보조금”이란 공주시(이 하 “시”라 한다)이외의 자 가 수행----- 사업 을 시가 공익상·시책상 필요 에 따라 ----- ----- <u>자금</u>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 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u>자금을 포함한다</u>)-----.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 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 ----- -----.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 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 다.		3. “보조사업자”란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 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 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 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u> 가 정 하는 바에 <u>의한다</u>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 ----- ----- <u>조례</u> 로 -- ----- <u>따른다</u> .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선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생 략)

제5조(보조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 7. (생 략)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이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4조(보조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것으로 -----
3.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붙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4. -----
----- 산출기초
5. ~ 7. (현행과 같음)
8. ----- 수행으로 -----
9. 그 밖에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1. ~ 3. (생략)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
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
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
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신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
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
건을 부가한 통지서를 보조금교
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보조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1. ~ 3. (현행과 같음)

4. -----

----- 한정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
----- 결정할
때 -----

-----.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 할 때는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
조금을 정산할 때는 카드사용내
역서 원본을 증명서류로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
증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
지) ① -----
- 결정할때 -----
-- 덧붙인 경우에는 덧붙인 ---

-----.

② -----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③ (생략)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따라 미
리 -----
-----.

제10조(사정변경에 따른 -----
-----) ① -----

--- 변경으로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

----- 따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
-----.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2.1.2.)

② (생략)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

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신고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연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

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폐지신고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

----- 미리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

----- 보조사업 -----

----- .

② -----

----- 사업 -----

----- .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

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신 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야 ----.

② -----
-----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시장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에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운영과 관련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감독) -----
---- 집행을 -----
----- 인정하면 -----
----- 받은자에게 -----
----- 소속공무원에게 -----
----- 또는 -----
-----.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 을 교부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 ----- ----- ----- -----.
1. 보조사업이 <u>개시</u> 되었을 때	1. ----- <u>시작</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 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 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 조례에 <u>의한</u> 명령이나 처 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 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6. ----- <u>따른</u> ----- ----- -----

공주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 7. 5.)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72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국”을 “안전산업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산업국에 두는 과)”를 “(안전산업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국에”를 “안전산업국에 안전관리과,”로, “수도과,
재난관리과”를 “수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
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정책, 재난관리, 재해대책, 통합방위, 향토예비군 육성, 민방위,
특사경 지원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85명”을 “98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68명”을 “969명”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산업국장”을 각각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산업국”을 “안전산업국”으로 한다.

⑤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⑥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⑦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⑩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⑪ 「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⑫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각각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⑬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⑭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⑯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⑰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⑱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각각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⑲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⑳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㉑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㉒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u>28% 이내</u>	<u>32% 이내</u>	<u>24% 이내</u>	<u>8% 이상</u>

다만, 보건진료직렬 6급 16명 중 12명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 이내	15% 이내	23% 이내	57%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	30% 이내	70% 이상	0%	0%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

직 급 별 \ 기 관 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회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u>986</u>	-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u>827</u>	-				
4 급	6	4	1	1		
5 급	51	25	2	5	3	16
6 급 이 하 계	<u>770</u>	-				
연 구 직 계	4	-				
연 구 관						
연 구 사	4	-				
지 도 직 계	30	-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7	-				
별 정 직 계	3	-				
5 급 상 당						
6급 상당 이하 계	3	-				
기 능 직 계	<u>121</u>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국·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국, 산업국 및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을 둔다.	제6조(국·단의 설치) ----- ----- 안 전산업국 ----- -----.
제8조(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산업국에 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재생과, 허가과, 교통과, 환경과, 청소과, 수도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제8조(안전산업국에 두는 과) ① 안전산업국에 안전관리과, ----- ----- ----- 수도과----- -.
② 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안전산업국장-----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안전정책, 재난관리, 재해대책, 통합방위, 향토예비군 육성, 민방위, 특사경지원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2. ~ 10. (생략)	3. ~ 11. (현행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재난관리, 재해대책, 통합방위, 향토예비군 육성, 민방위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85명이며, 다음 각	제23조(정원의 총수) ----- ----- ----- 986명-----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968명

2. (생략)

-----.

1. ----- 969명

2.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 7. 5.)에서
의결된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73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보육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우선입소) ①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5년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아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탁자 및 시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⑤ 시장은 같은 법인이나 같은 단체 또는 같은 사람에게 시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는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원장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 ① 공립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는 임면사항을 임면일 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육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충상담자에게는 그 이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립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수탁자 변경에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시설물과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영유아의 급식비·간식비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위탁으로 본다.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 집의 원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 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공주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주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 7. 5.)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74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변경한 때”를 “변경한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을 부과 대상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축한 때”를 “개축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증감한 때”를 “증감한 경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경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제25조제1항 중 “정확한지 여부”를 “정확한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u>증빙서류</u>	2. ----- ----- <u>증명서류</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의무) ① (생략)	제8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u>변경한 때</u>	3. ----- ----- <u>변경한 경우</u>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의무) ① (생략)	제11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1. 사업소를 <u>새로이</u> 신설하였을 때	1. ----- <u>새로</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u>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u>)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u>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u>	제14조(<u>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u>)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을 부과 대상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u>과세특례</u>)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u>과세특례</u> 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5조(<u>도시지역분</u>) ----- ----- <u>도시지역분</u> -----.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5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	제16조(납기) ----- ----- ----- <u>10만원</u> ----- -----

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
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
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
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생 략)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
축, 개축한 때

3. ~ 5. (생 략)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
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
적을 증감한 때

7.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
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에 관한 신고의무) ① -----

해당하는 경우-----

-----.

1. (현행과 같음)

2. -----
---- 개축한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6. -----

--- 증감한 경우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 해당하는 경우-----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lines across the page. Each set consists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in handwriting practice. The margins are consistent throughout the document.

1. 선박을 취득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2. ~ 5. (생략)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u>정 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u> 한 다. ②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 ----- ----- ----- <u>정확한지</u>----- -. ② (현행과 같음)
---	---

공주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 7. 5.)에서
의결된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75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일반주택”을 “공주시 소재 일반주택”으로 한
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세대 이상
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5퍼센트는 사업자가 부담하고”를 “2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15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부담율이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를 “사업자가 주민 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율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그 결과”를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때”를 “같은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4호 중 “(임원 포함)”을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개최”를 “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중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를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서”로 한다.

제8조 중 “전문가로 하여금”을 “전문가에게”로 한다.

제9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u>의한</u>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u>일반주택</u> 에 대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따른</u> ----- ----- ----- <u>공주시 소재 일반주택</u>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의공급 대상 구역에 <u>한한다</u> . <단서 신설>	제3조(지원대상) ① ----- ----- ----- ----- ----- ----- <u>한정한다</u> . <u>다만, 시장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세대 이상 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④ 공급관 설치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단서 삭제 2011.12.21.)

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5퍼센트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15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부담율이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생략)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③ 제1항에도 -----

-----.

④ -----
----- 경우에는 -----

-----.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
----- 60퍼센트 -----
-----.

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0퍼센트 이상을-----
----- --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율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결과

를 주민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4. 도시가스공급업체 (임원 포

-----.

③ -----

----- 같은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회의
에 부치는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 임원 또

함) 1명

5. · 6. (생 략)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생 략)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

는 직원 ---

5. · 6. (현행과 같음)

⑥ -----
----- 개의-----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교부) -----

-----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서

-----.

제8조(감독) -----

촉한 <u>전문가로 하여금</u>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u>조례에</u>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u>전문가에게</u> ----- ----- -----. 제9조(준용) -- <u>조례에서</u> ----- ----- ----- --.
---	---

공주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 7. 5.)에서
의결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76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칠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써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2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사가 확인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2.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이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의 전단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추가 지정)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지상권·임차권이 있는 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공주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을 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는 “공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하거나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등) 시장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의 경과 조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에 맞춰 고시하는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 관련)

대상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5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5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0만원
- 21.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5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6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8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30만원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60만원

80만원+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 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이수 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시지역)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5,5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 (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3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5,5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5,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7,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하. 벽보(1건)	7,000원
거. 전단(1건)	3,0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20,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10,0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시·구지역)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3만원
- 0.6㎡ 이상 0.8㎡ 이하	22만원
- 0.9㎡ 이상 1.0㎡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4㎡ 이상 1.6㎡ 이하	50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0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4㎡ 이상 1.6㎡ 이하	33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 라) 연면적 3㎡ 이상

67만원

79만원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15만원을 더한 금
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
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
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
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
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
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2호서식]

현수막 등 신고수리 검사인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공 주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변)	⑦ 광고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⑭ 직	⑮ 성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량	⑤ 모관 연월일	⑥ 모관 장소	⑦ 위반정소 ·위치	⑧ 담당 (취급)자	⑨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등 관리 대장

① 번	② 일련 번호	③ 허가 신청 번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명	⑤ 소재 지	⑥ 전 화 번호	⑦ 주 석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고 면적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제24조제7항 관련)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 7. 5.)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77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리적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항 등)
2. 대상지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자금조달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8조(재공고·열람)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 각호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에 따른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2.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시설은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
3. 「수도법」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는 수도업무 담당부서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시설은 하수도업무 담당부서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유원지 등 녹지시설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녹지 업무 담당부서
6. 그 밖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그 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으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4.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흙깎기·흙쌓기·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흙깎기·흙쌓기·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흙깎기 및 흙쌓기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로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2.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3.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경사도가 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2조 및 24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흙쌓기·흙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흙쌓기하기 전의 지반과 흙쌓기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흙깎기포함)공사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자문 및 확인을 받아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예정된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공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에서의 제한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3부터 별표 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5와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관도로(주 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의 빈터)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 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36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에서
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
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
에 설치할 수 없다.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보
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
마원,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 병원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차장 및 주차장
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유원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로써 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업·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제45조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는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용도 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도시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9조(빈터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빈터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빈터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은 $[(1+0.3a)/(1-a)] \times \text{해당 용적률}$, 이 경우 a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에 따른다.

제5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 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 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 기 준에 따 른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

제51조(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최고고도 지구 해제 지역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52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내로 참여하고, 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며 별표 26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1회 심의는 30일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사항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한 참여 또는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회의록) ① 영 제113조3제1항에 따라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심의종결일부터 6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64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제54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제7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5항의 규정은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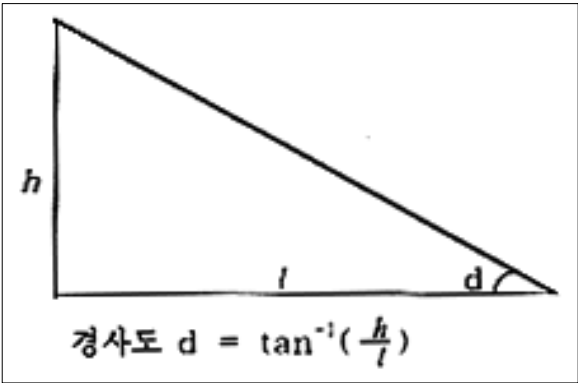
[별표 1] 경사도 조사방법(제19조 관련)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 (2)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 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 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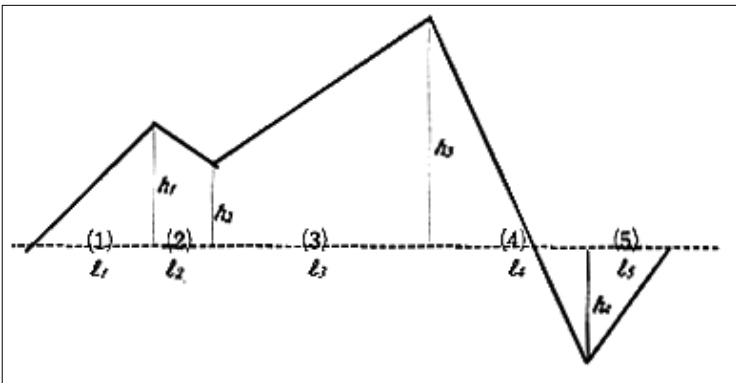
(1) 일반적인 경우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구 간	평면거리	고저차	구간별 경사도	경사도 가중치
(1)	l_1	h_1	$d_1 = \tan^{-1} \frac{h_1}{l_1}$	$d_1 l_1$
(2)	l_2	$h_1 - h_2$	$d_2 = \tan^{-1} \frac{h_1 - h_2}{l_2}$	$d_2 l_2$
(3)	l_3	$h_3 - h_2$	$d_3 = \tan^{-1} \frac{h_3 - h_2}{l_3}$	$d_3 l_3$
(4)	l_4	$h_3 + h_4$	$d_4 = \tan^{-1} \frac{h_3 + h_4}{l_4}$	$d_4 l_4$
(5)	l_5	h_4	$d_5 = \tan^{-1} \frac{h_4}{l_5}$	$d_5 l_5$

$$\text{전체 경사도 } d = \frac{d_1 l_1 + d_2 l_2 + d_3 l_3 + d_4 l_4 + d_5 l_5}{l_1 + l_2 + l_3 + l_4 + l_5} = \frac{\sum d_i l_i}{\sum l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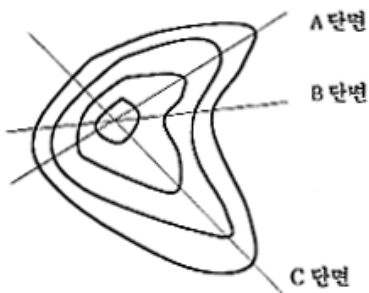
d_i : i 구간 경사도

l_i : i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 단면을 설정하며 위(2)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 단면 경사도

$$d_A = \frac{\sum d_{Ai} l_{Ai}}{\sum l_{Ai}}$$

B 단면 경사도

$$d_B = \frac{\sum d_{Bi} l_{Bi}}{\sum l_{Bi}}$$

d_{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_{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_{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_{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text{전체 경사도 } d = \text{Max}(d_A, d_B, d_C, \d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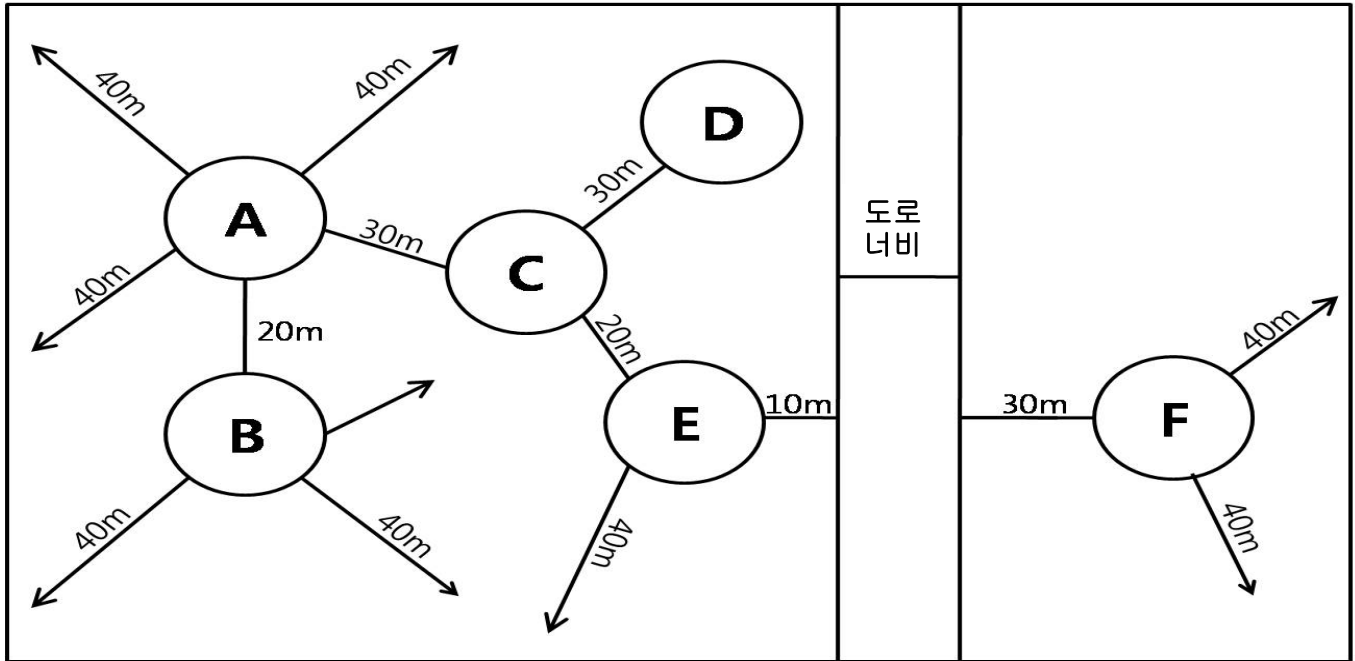
[별표 2]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 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용도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40m 이내	30,000m ²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조례 제20조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40m 이내	30,000m ²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조례 제20조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자연녹지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40m 이내	10,000m ²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 너비 6m이상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 거리산정에 있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 한한다.



<집단화 유도 예시 그림>

* 그림설명: 기준을 기존 개발전체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거리 40m 이내로 정한 경우

- 공장 A부터 F까지 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고, 공장 A부터 F까지 어느 공장이든 그 공장부지에서 40m 이내거리에는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 등을 건축 가능하고, 공장을 신축하면 그 공장으로부터 다시 40m 이내 거리에는 계속 신축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하나의 개발행위규모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주변은 집단화유도지역이 됨

[별표 3]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5]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5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5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10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별표 9]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10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영 별표9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10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영 별표10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 다)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 다)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10호 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6]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7 제8호 가목부터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5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별표 20 제9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마목, 자목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2]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 시설 등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20 제9호 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5]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다.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에 한한다)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 마.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별표19 제10호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반경 15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비고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3. 모든 거리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말한다.
4. 1호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호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하고, 폐가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청렴서약서 (제53조제4항 관련)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렴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내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주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평·공정하게 심의한다.
3. 본인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3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심의 안건을 회피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44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민간전문가”를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7의4 가호 표 직렬 녹지 직류 조정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에 “기능사: 조정, 산림”을 추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의3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계 가 공, 보 일 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기 능 장 : 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 도교통안전관 리사

공 업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 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 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 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 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간비용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 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 자로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 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 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 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 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 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 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학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 능 사 :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 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 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잠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 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 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 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 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 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 자(일반), 방사 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 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u>조경, 산림</u>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 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경	수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대기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산림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방 송 통 신	디자 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전자통신기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험위원) ① (생략)	제13조(시험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필 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 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 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 분의 2 이상을 <u>민간전문가</u> 로 하 여야 한다.	③ ----- ----- ----- ----- 다른 행정기 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 가-----.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 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 다.	<삭 제>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에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 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44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주시”를 “시”로,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특별사범경찰활동으로 민생안정을 강화하는데 있으며”를 “향상시키는데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산업국)”을 “(안전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경제과장·건설과장·도시재생과장·허가과장·수도과장·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경제과장·건설과장·도시재생과장·허가과장·수도과장”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며,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의 설치 목적은 재난·재해 대응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조성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3.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상황실) 및 재난 현장지휘소 구성·운영 총괄
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5. 지역 방재 종합계획 수립·운영
6. 자연적·인적·사회적 재난 총괄
7. 생활안전정책 총괄
8.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관계 법령과 관련된 부서에서 유지·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당한다.
9. 재난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수준 진단·분석
11. 안전지수, 안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12. 재난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13.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14. 재해복구 계획 수립
15. 방재 장비·물자 통합관리·운영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건축물 관리
17.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역 지정·관리

18. 재난위험시설 · 지역 지정 · 관리 및 해소계획 수립
19. 재난 유형별 실제훈련 계획 수립 · 운영
20.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 · 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운영
2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
22. 민방위 시설 · 장비 관리
23. 민방위대 조직운영, 자원관리, 동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4.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25. 테러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26.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27. 「통합방위법」에 관한 사항
28.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29. 을지연습,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에 관한 사항
30. 소방행정 등에 관한 사항(소방관련 사업 포함)
31.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32. 농 · 축 · 수 ·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33.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34. 치수 및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35.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36. 위임 관리하는 국 · 도유재산(하천 · 제방)의 관리 · 취득 · 처분
37. 하천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
38. 금강 사업 및 유지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안전 · 재난, 민방위, 특별사법경찰 및 하천에 관한 사항

제23조제39호를 제4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승강기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표 중 담당관·과·팀란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토지과 다음에 둔다.

②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정직공무원의 직명 및 상당계급 구분표

(단위: 명)

구분	직명	계	6~7급 상당	7급 상당	7~8급 상당	8급 상당	비고
계		3	1		2		
보 사 분 야	보 건 진 료 원	1	1				
	보 건 위 생 감 시 원	2			2		

③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별표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총 계	986	524	17	158	62	225	20	134	7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827	447	13	112	42	213	19	128	66
4급 소계	6	4	1	1					
지방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5급 소계	51	25	2	5	3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6	6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사서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2	2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6	11	2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2					2			2
지방행정·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11					11	1	7	3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3	137	3	39	11	53	5	36	12
지방행정주사	75	52	2		6	15	1	9	5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주사	1			1					
지방보건진료주사	16			16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5	4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6	5			1	10	1	6	3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5	5							
지방행정·농업주사	12	1		4		7	1	3	3
지방행정·녹지주사	4	3			1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25	23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3			3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7					7	1	6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4	1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1	1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2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1	2				9	1	8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7급 소계	259	159	4	25	13	58	5	32	21
지방행정주사보	74	53	3	1	5	12	2	2	8
지방세무주사보	6	6							
지방전산주사보	2	2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5	4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6	26							
지방방송통신주사보	2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5	5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2	3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5	6				9	1	7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6	5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2		2		12		10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9	15	1			3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4			4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2	2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8급 소계	194	97	3	34	8	52	4	32	16
지방행정서기	43	24	3		1	15	2	6	7
지방전산서기	1	1							
지방세무서기	9	8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10	4				6		6	
지방사서서기	2				2				
지방공업서기	4	1		1	2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9	10			1	8		8	
지방행정·전산서기	3	2			1				
지방행정·세무서기	9	1				8	1	3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2	8			1	3		2	1
지방행정·공업서기	5	5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1	1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지방행정·시설서기	20	17				3		1	2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3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2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9급 소계	74	25		8	7	34	4	19	11
지방행정서기보	25	7		1	2	15	2	9	4
지방사회복지서기보	3					3	1	1	1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1				3		2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7	1				6		1	5
지방행정·공업서기보	2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보	4					4		4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행정·시설서기보	5	4				1		1	
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시설·녹지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연구직 계	4	3			1				
지방학예연구사	3	2			1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소계	3			3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도사 소계	27			27					
지방농촌지도사	23			23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소계	1			1					
보건진료원	1			1					
7급상당 소계	2			2					
보건위생감시원	2			2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기능직 계	121	73	4	13	19	12	1	6	5
기능6급 소계	6	3		1	2				
지방기계·운전장	2	2							
지방열관리·운전장	1			1					
지방전기·건축·위생장	1				1				
지방통신·열관리·위생장	1				1				
지방전기·기계·운전장	1	1							
기능7급 소계	18	14		1	2	1			1
지방통신장	1				1				
지방전기장	1	1							
지방기계장	3	3							
지방열관리장	1	1							
지방운전장	4	4							
지방위생장	2	1				1			1
지방조무장	1	1							
지방전기·기계장	1	1							
지방기계·열관리장	1				1				
지방기계·운전장	3	2		1					
기능8급 소계	27	16		3	5	3		2	1
지방통신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6	4		1	1				
지방운전원	10	9			1				
지방위생원	6			1	2	3		2	1
지방사무실무원	2	2							
지방기계·열관리원	1			1					
기능9급 소계	70	40	4	8	10	8	1	4	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건축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4	1		1	2				
지방운전원	28	20	2	4	2				
지방위생원	10			1	3	6		3	3
지방사무실무원	23	16	2	2	2	1		1	
지방조무원	1	1							
지방전기·기계원	1	1							
지방기계·열관리원	1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인사담당관) ① (생략)	제7조(인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담당관의 설치목적은 <u>공주시</u> 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며, 후생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행정능률을 <u>향상시키고</u> , 지속적인 특별사법경찰활동으로 민생안정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u>시</u> ----- ----- ----- ----- <u>향상시키고</u> ----- <u>는데 있고</u>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삭제>
24. 농·축·수·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삭제>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제21조(산업국) 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경제과장·건설과장·도시재생과장·허가과장·수도과장·재난관리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	제21조(<u>안전산업국</u>) <u>안전산업국장</u> ----- ----- <u>안전관리과장·경제과장·건설과장·도시재생과장·허가과장·수도과장</u> ----- ----- -----

현행	개정안
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 ----- ----- -----. 제22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의 설치 목적은 재난·재해 대응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조성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3.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상황실) 및 재난 현장지휘소 구성·운영 총괄 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5. 지역 방재 종합계획 수립·운영 6. 자연적·인적·사회적 재난 총괄 7. 생활안전정책 총괄 8.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현행	개정안
<u><신 설></u>	<u>관계 법령과 관련된 부서에서 유지·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당한다.</u> <u>9. 재난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u>10. 재난안전수준 진단·분석</u> <u>11. 안전지수, 안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u> <u>12. 재난분야 매뉴얼 통합관리</u> <u>13.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u> <u>14. 재해복구 계획 수립</u> <u>15. 방재 장비·물자 통합관리·운영</u> <u>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건축물관리</u> <u>17.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역 지정·관리</u> <u>18.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및 해소계획 수립</u> <u>19. 재난 유형별 실제훈련 계획 수립·운영</u> <u>20.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u>

현행	개정안
<u><신 설></u>	21. <u>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u> 22. <u>민방위 시설·장비 관리</u> 23. <u>민방위대 조직운영, 자원관리, 동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u> 24. <u>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u> 25. <u>테러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u> 26. <u>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u> 27. 「<u>통합방위법</u>」에 관한 사항 28. 「<u>향토예비군 설치법</u>」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9. <u>을지연습,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에 관한 사항</u> 30. <u>소방행정 등에 관한 사항(소방 관련 사업 포함)</u> 31. <u>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u> 32. <u>농·축·수·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u> 33. <u>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34. <u>치수 및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u>

현행	개정안
<u><신 설></u>	35.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36. 위임 관리하는 국·도유재산 (하천·제방)의 관리·취득·처분 37. 하천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 38. 금강 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안전·재난, 민방위, 특별사법경찰 및 하천에 관한 사 항
제22조(경제과) 경제과의 설치 목적 은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창업, 유치, 경영개선과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등 수요자 중심의 기 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균형 있 는 시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8. (생략) <u><신 설></u> 39 (생략) 제23조 ~ 제30조 (생략) 제31조(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의 설치 목적은 신속한 재난 대응체	제23조(경제과) ----- ----- ----- ----- ----- ----- ----- -----. 1. ~ 38. (현행과 같음) 39. 승강기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0. (현행 제39호와 같음) 제24조 ~ 제31조 (현행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계 구축으로 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관리계획 수립·운영 2.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구성·운영 총괄 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4. 지역 방재 종합계획수립 시행 5. 자연재해 대책 수립 추진 6.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7. 재해복구 계획 수립 8. 재해 장비 관리·운영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건축물 관리 10.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역 지정 관리 11.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및 장·단기계획 수립 12.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 13.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14. 민방위대 조직운영, 자원관리, 동원, 교육에 관한 사항 1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삭 제>

현 행	개 정 안
<u>16. 테러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u> <u>17.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u> <u>18. 「통합방위법」에 관한 사항</u> <u>19.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관한 사항</u> <u>20.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에 관한 사항</u> <u>21.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u>24. 치수 및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u> <u>25.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u> <u>26. 유도선 관리</u> <u>27. 위임 관리하는 국·도유재산 (하천·제방)의 관리·취득·처분</u> <u>28. 하천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u> <u>29. 금강 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30. 그 밖에 재난, 하천, 민방위에 관한 사항</u>	<삭 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담당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7월 15일

공주시 훈령 제21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담당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담당배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당면 주요시책 지도책임 분담표 표 중 분담지도관란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②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공주시 재해발생시 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④ 「공주시 공공시설물 개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⑤ 「공주시 방화대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⑥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⑦ 「공주시방위지원본부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소 계	시 정 당 관	기 획 당 관	인 사 당 관	정 보 감 사 당 관	소 계	사 회 과	복 지 과	민 원 과	회 계 과	세 무 과	문 화 체 육 과	관 광 과	문 화 재 과	토 지 과	소 계	안 전 관 리 과	경 제 과	건 설 과	산 림 과	도 시 재 생 과	허 가 과	교 통 과	환 경 과	청 소 과	수 도 과	소 계	공 공 개 발 사 업 과	5 도 2 촌 과
총계	524	76	20	21	14	21	189	25	26	18	24	27	14	18	15	22	229	27	18	24	19	15	24	25	17	34	26	30	13	17
정무직 계	1	1	1																											
시장	1	1	1																											
일반직 계	447	65	15	19	12	19	170	25	26	11	17	26	13	18	13	21	183	25	17	19	17	14	23	18	16	12	22	29	12	17
4급 소개	4	1		1			1	1									1	1										1	1	
지방서기관	1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3						1	1									1	1										1	1	
5급 소개	25	4	1	1	1	1	9	1	1	1	1	1	1	1	1	1	10	1	1	1	1	1	1	1	1	1	1	2	1	1
지방행정사무관	6	3	1	1	1		3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복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1						4						1	1	1	1	6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1																								
6급 소개	137	21	5	6	4	6	48	6	7	4	5	7	4	5	4	6	59	9	5	7	6	5	5	6	5	5	6	9	4	5
지방행정주사	52	17	5	6	4	2	19	1	1	3	4	1	3	4	1	1	12	3	3	1				3		1	1	4	1	3
지방세무주사	2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3	2																					
지방복지주사	3																3				3									
지방시설주사	12						3								1	2	9	1		2		2	2				2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4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5						5	1	4																					
지방행정·전산주사	2	1				1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5						1			1							4		1					2		1				
지방행정·농업주사	1																1	1												
지방행정·복지주사	3																3				3									
지방행정·보건주사	2	1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3	1					
지방행정·시설주사	23	1				1	6						1	1	2	2	13	3	1	4		3	1				1	3	3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1																1							1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1				1						1						1							
지방행정·복지·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2																2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1																											1		1
7급 소개	159	30	8	8	6	8	57	9	7	4	7	8	4	5	4	9	63	9	5	8	6	4	10	6	4	4	7	9	4	5
지방행정주사보	53	23	8	7	6	2	12	1	1	3	2	1	2	1	1		15	4	3	1		1		3	1		2	3	2	1
지방세무주사보	6						6					6																		
지방전산주사보	2						1				1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7						7	4	3																					
지방공업주사보	4						1				1						3		1								2			
지방복지주사보	3																3				3									
지방환경주사보	3																3						1		1	1				
지방시설주사보	26	1				1	9				1		1	1	1	5	15	2	1	4		2	5				1	1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1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5	1				1	2									2												2		2
지방행정·세무주사보	3	1		1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1				1	5	3	2																					
지방행정·공업주사보	5						3			1				1	1		2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1						1					1	1	
지방행정·복지주사보	4																4				3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5						5				1			1	1	2	9	1		3		1	2	1		1		1		1

구 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소 계	시 정 당 관	기 획 당 관	인 사 당 관	정 보 감 사 당 관	소 계	사 회 과	복 지 과	민 원 과	회 계 과	세 무 과	문 화 체육 과	관 광 과	문 화 재 과	토 지 과	소 계	안 전 관 리 과	경 제 과	건 설 과	산 림 과	도 시 재 생 과	허 가 과	교 통 과	환 경 과	청 소 과	수 도 과	소 계	공 공 개 발 사업 과	5 도 2 촌 과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1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1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1															1	1													
지방복지·시설주사보	1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1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2						2	1	1																					
8급 소계	97	8	1	3	1	3	44	7	8	1	2	9	4	6	4	3	40	4	5	3	2	4	6	4	4	2	6	5	1	4
지방행정서기	24	4	1	2	1		14	2		1	2		3	4	2		4		2				1	1			2		2	
지방전산서기	1	1				1																								
지방세무서기	8						8					8																		
지방사회복지서기	4						4	1	3																					
지방공업서기	1																1			1										
지방복지서기	2																2				1		1							
지방환경서기	2																2							1	1					
지방시설서기	10						3								1	2	7			2		2	1			2				
지방행정·전산서기	2	1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8	1				1	7	3	4																					
지방행정·공업서기	5						2		1					1			3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2																2	1				1								
지방행정·복지서기	1																1				1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1		2					
지방행정·시설서기	17						4						1	1	1	1	12	1	2			2	2	2		1	2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1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1						1	1																						
9급 소계	25	1				1	11	1	3	1	2	1		1		2	10	1	1		2		1	1	2		2	3	1	2
지방행정서기보	7						3			1	1			1			3		1				1	1			1		1	
지방공업서기보	1																1										1			
지방복지서기보	1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2						
지방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1						1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1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1			
지방행정·시설서기보	4						1				1						1	1										2	1	1
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시설·복지서기보	1																1				1									
연구직 계	3	1			1		2								2															
지방학예연구사	2						2								2															
지방기록연구사	1	1			1																									
기능직 계	73	9	4	2	1	2	17			7	7	1	1			1	46	2	1	5	2	1	1	7	1	22	4	1	1	
기능6급 소계	3	1	1														2						1		1					
지방기계·운전장	2	1	1														1									1				
지방전기·기계·운전장	1																1							1						
기능7급 소계	14	3	2	1			4			1	3						7			2				2	1	1	1			
지방전기장	1																1						1							
지방기계장	3	1	1				1			1							1										1			
지방열관리장	1						1				1																			
지방운전장	4	1		1			1				1						2			1				1						
지방위생장	1						1				1																			
지방조무장	1																1													
지방전기·기계장	1																1									1				
지방기계·운전장	2	1	1														1			1										
기능8급 소계	16	4	1		1	2	4			1	3						8			1			2		4	1				

구 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소 계	시 정 담 당 관	기 획 담 당 관	인 사 담 당 관	정보감 사담 당 관	소 계	사 회 과	복 지 과	민 원 과	회 계 과	세 무 과	문 화 체 육 과	관 광 과	문 화 재 과	토 지 과	소 계	안 전 관 리 과	경 제 과	건 설 과	산 림 과	도 시 재 생 과	허 가 과	교 통 과	환 경 과	청 소 과	수 도 과	소 계	공 공 개 발 사 업 과	5 도 2 촌 과	
지방통신원	1	1				1																									
지방기계원	4	1	1				1			1							2			1						1					
지방운전원	9						3				3						6							2		3	1				
지방사무실무원	2	2			1	1																									
기능9급 소계	40	1		1			9			5	1	1	1			1	29	2	1	2	2	1	1	2		16	2	1	1		
지방건축원	1																1						1								
지방기계원	1																1										1				
지방운전원	20						1			1							19	1		1	1			1		15					
지방사무실무원	16	1		1			8			5		1	1			1	6		1	1	1	1				1	1	1	1		
지방조무원	1																1							1							
지방전기·기계원	1																1	1													

[별표 2]

공주시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의회사무국
총계	17
일반직 계	13
4급 소계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1
5급 소계	2
지방행정·시설사무관	2
6급 소계	3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시설주사	1
7급 소계	4
지방행정주사보	3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8급 소계	3
지방행정서기	3
기능직 계	4
기능9급 소계	4
지방운전원	2
지방사무실무원	2

[별표 3]

공주시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총계	158	90	71	19	68	21	14	16	17
일반직 계	112	81	63	18	31	16	14		1
4급 소계	1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1						
5급 소계	5	3	1	2	2	1	1		
지방의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1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농촌지도관	1				1		1		
6급 소계	39	29	24	5	10	5	5		
지방농업주사	2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1						
지방보건주사	1	1	1						
지방보건진료주사	16	16	16						
지방행정·농업주사	4				4	2	2		
지방행정·보건주사	2	2	2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1	1		
지방보건·간호주사	3	3	2	1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2	2					
7급 소계	25	14	8	6	11	6	5		
지방행정주사보	1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2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2	2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1	1		1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1	1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지방농업·수의주사보	2				2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4	4	2	2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1						
8급 소계	34	28	24	4	6	4	1		1
지방공업서기	1				1				1
지방농업서기	4				4	3	1		
지방보건서기	4	4	4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7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1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3	3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5	2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2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1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1						
9급 소계	8	6	5	1	2		2		
지방행정서기보	1				1		1		
지방농업서기보	1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2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2	1					
지도직 계	30				30	1		16	13
지도관 소계	3				3	1		1	1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1	
지방농촌지도관	1				1				1
지도사 소계	27				27			15	12
지방농촌지도사	23				23			13	10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1
별정직 계	3	3	3						
6급상당 소계	1	1	1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보건진료원	1	1	1						
7급상당 소계	2	2	2						
보건위생감시원	2	2	2						
기능직 계	13	6	5	1	7	4			3
기능6급 소계	1	1	1						
지방열관리·운전장	1	1	1						
기능7급 소계	1				1				1
지방기계·운전장	1				1				1
기능8급 소계	3	1	1		2	1			1
지방기계원	1				1				1
지방위생원	1	1	1						
지방기계·열관리원	1				1	1			
기능9급 소계	8	4	3	1	4	3			1
지방기계원	1				1				1
지방운전원	4	3	2	1	1	1			
지방위생원	1				1	1			
지방사무실무원	2	1	1		1	1			

[별표 4]

공주시 사업소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공공시설관리소	관광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총계	62	17	24	16	5
일반직 계	42	11	14	13	4
5급 소계	3	1	1	1	
지방행정·사서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2	1	1		
6급 소계	11	3	4	3	1
지방행정주사	6	2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				1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행정·시설주사	1	1			
7급 소계	13	3	4	5	1
지방행정주사보	5	1	3		1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1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1	1			
8급 소계	8	2	3	2	1
지방행정서기	1	1			
지방사서서기	2			2	
지방공업서기	2	1	1		
지방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전산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				1
9급 소계	7	2	2	2	1
지방행정서기보	2	1	1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연구직 계	1		1		
지방학예연구사	1		1		
기능직 계	19	6	9	3	1
기능6급 소계	2	1		1	
지방전기·건축·위생장	1			1	
지방통신·열관리·위생장	1	1			
기능7급 소계	2	2			

구 분	계	공공시설관리소	관광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지방통신장	1	1			
지방기계·열관리장	1	1			
기능8급 소계	5		5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1		1		
지방위생원	2		2		
기능9급 소계	10	3	4	2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2	2			
지방운전원	2			1	1
지방위생원	3		2	1	
지방사무실무원	2		2		

공주시 읍·면·동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읍		면										동						
		소	유	소	이	탄	계	반	의	정	우	사	신	소	중	웅	금	옥	신	월
		계	구	계	인	천	통	포	당	안	성	국	풍	계	학	진	학	룡	관	송
총계	225	20	20	134	14	14	17	15	14	15	17	14	14	71	10	11	10	13	15	12
일반직 계	213	19	19	128	13	13	16	14	14	14	16	14	14	66	9	10	9	12	15	11
5급 소계	16	1	1	9	1	1	1	1	1	1	1	1	1	6	1	1	1	1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11	1	1	7	1	1	1	1	1		1	1		3		1	1		1	
6급 소계	53	5	5	36	4	4	4	4	4	4	4	4	4	12	2	2	2	2	2	2
지방행정주사	15	1	1	9	1	1	1	1	1	1	1	1	1	5	1	2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0	1	1	6	1		1		1	1	1		1	3				2	1	
지방행정·농업주사	7	1	1	3	1	1						1		3			1		1	1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7	1	1	6			1	1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3			3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9	1	1	8	1	1	1	1	1		1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1			1						1										
7급 소계	58	5	5	32	3	4	4	3	4	3	3	4	4	21	2	4	3	4	4	4
지방행정주사보	12	2	2	2							1	1		8	1	2	1	2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2			6	1	1	1		1		1		1	6	1	1	1	1	1	1
지방행정·세무주사보	9	1	1	5	1		1	1	1			1		3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9	1	1	7		1	1	1	1	1		1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2			10	1	2	1	1	1	1	1	1	1	2			1			1
지방행정·녹지주사보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3	1	1	1									1	1				1		
8급 소계	52	4	4	32	4	3	4	3	3	3	6	3	3	16	2	1	1	4	6	2
지방행정서기	15	2	2	6	1		2		1			1	1	7	1	1		2	3	
지방세무서기	1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6			6	1			1		1	1	1	1							
지방시설서기	8			8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8	1	1	3	1						1		1	4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3			2		1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5	1	1	2					1		1			2				1	1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1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3			1				1						2					1	1
9급 소계	34	4	4	19	1	1	3	3	2	3	2	2	2	11	2	2	2	1	2	2
지방행정서기보	15	2	2	9	1		1	1	1	1	1	2	1	4		1	1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3	1	1	1			1							1	1					
지방농업서기보	1			1			1													
지방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3			2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6			1						1				5	1	1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보	4			4		1		1	1		1									
지방행정·시설서기보	1			1									1							
기능직 계	12	1	1	6	1	1	1	1		1	1			5	1	1	1	1		1
기능7급 소계	1													1			1			
지방위생장	1													1			1			
기능8급 소계	3			2				1		1				1				1		
지방위생원	3			2				1		1				1				1		
기능9급 소계	8	1	1	4	1	1	1				1			3	1	1				1

구 분	계	읍		면										동					
		소	유	소	이	탄	계	반	의	정	우	사	신	소	중	웅	금	옥	신
		계	구	계	인	천	룡	포	당	안	성	곡	풍	계	학	진	학	룡	관
		읍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동	동	동	동	동
지방위생원	6			3	1	1					1			3	1	1			1
지방사무실무원	1			1			1												
지방기계·열관리원	1	1	1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로 배치하는 담당

기관별	부서명	담당수	배치하는 담당명	비고
합 계		172		
본 청	소 계	106		
담 당 관	시 정 담 당 관	4	행정, 홍보, 교육지원, 의전	
	기 획 담 당 관	5	기획, 예산, 법무통계, 의회평가, 서울사무소	
	인 사 담 당 관	3	서무, 인사, 후생	
	정 보감사담 당	4	감사, 조사, 정보화, 통신	
시 민 국	사 회 과	5	복지기획, 복지연계, 행복키움지원,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복 지 과	6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나래원	
	민 원 과	4	민원행정, 통합민원, 가족등록, 차량등록	
	회 계 과	4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세 무 과	6	세정, 도세, 시세, 징수, 세입, 과표	
	문 화 체 육 과	3	문화예술, 체육지원, 레저시설	
	관 광 과	3	관광진흥, 관광개발, 축제	
	문 화 재 과	3	문화재정책, 문화재관리, 고도보존	
안 전 산 업 국	토 지 과	4	토지행정, 지적관리, 공간정보, 새주소	
	안 전 관 리 과	6	안전정책, 재난관리, 민방위, 특사경지원, 하천관리, 금강사업	
	경 제 과	4	경제정책, 기업유치, 산업단지, 에너지일자리	
	건 설 과	5	건설행정, 농촌개발, 도로계획, 도로시설, 지역개발	
	산 림 과	4	산림자원, 산림보호, 공원녹지, 산림소득	
	도 시 재 생 과	4	도시행정,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도시개발	
	허 가 과	4	건축행정, 건축허가, 토지산림, 환경건축	
	교 통 과	5	교통행정, 교통안전, 차량관리, 자전거정책, 조명	
성 장 전 략 사 업 단	환 경 과	4	환경정책, 녹색성장, 환경지도, 수질관리	
	청 소 과	4	청소행정, 자원순환, 청소시설, 폐기물	
	수 도 과	5	수도행정,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상수도시설	
	공 공 개 발 사 업	3	행정지원, 복합연수단지, 상생발전	
	5 도 2 촌 과	4	도농교류, 농촌혁신, 새마을, 지역마케팅	
	의 회 사 무 국	2	의정, 의사	
	직 속 기 관			
	소 계	23		
보 건 소	보 건 과	4	보건행정, 방역, 의약, 위생	
	건 강 과	4	건강증진, 가족보건, 방문보건, 출산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과	4	농업정책, 농업지원, 농산유통, 원예특작	
	축 산 과	3	축산정책, 가축방역, 축산유통	
	농 촌 진 흥 과	4	지도기획, 인력육성, 생활기술, 자원기술	
	기 술 보 급 과	4	친환경농업, 소득경영, 시설채소, 농업기계	
사 업 소	소 계	10		
	공 공 시 설 관 리	3	관리, 운영, 공연기획	
	관 광 경 영 사 업	4	관리, 사적운영, 한옥마을, 석장리박물관	
	시 립 도 서 관	3	운영, 웅진관, 강북관	
읍 면 동	중 합 사 회 복 지			
	소 계	31		
	읍			
	유 구 읍	4	총무, 주민생활, 민원, 산업개발	
면	이 인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탄 천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계 룡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반 포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의 당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정 안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우 성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사 곡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신 풍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동	6 동		사무장	

시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13-47(2013. 3. 11)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된 시나무골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01일

공 주 시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시 교동B 지구와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공주시 중학동 167번지 일원

- 지구면적 : 26,337.5㎡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성 명 : 공주시장

라.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 2013. 12. 31일까지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3년 7월 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획지			
14	1BL	-	용 도	-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건축물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건 폐 율	• 6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용 적 른	• 220%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높 이	• 15층 이하	-
			배 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를 유도	-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색 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건 축 물	-	-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별첨

편 입 토 지 조 서

연번	위치	분할전		공부상 면적 (㎡)	분할후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및 성명	주소 및 성명		
1	공주시 중학동	163-3	102.5	102.5	163-12	13.4	대	13.4	대전서구둔산2동 은하수아파트 101동-1104호오종수	근저당권자 대전광역시중구오류동 175-1삼성아파트3-203 김성일		
2	공주시 중학동	163-6	271.7	271.7	163-13	39.8	`	39.8	공주군공주읍 중학동163-2원무중	-		
3	공주시 중학동	163-8	53.5	53.5	163-14	49.2	대	49.2	-	-		
4	공주시 중학동	165-1	218.2	218.2	165-38	28	대	28	공주시중학동 학관촌길14(중학동) 유봉홀	-		
5	공주시 중학동	165-14	238.0	238.0	165-39	26.1	대	26.1	공주시중학동176-1 이봉금	-		
6	공주시 중학동	165-15	89.3	89.3	165-40	45.2	대	45.2	옥룡동48-3 권오찬	-		
7	공주시 중학동	165-36	85.1	85.1	165-36	85.1	대	85.1	공주시학관촌길14-6 (중학동)지재일	-		
8	공주시 중학동	166	152.1	152.1	166-2	30.3	대	30.3	공주군의당면덕학리553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158-30선경2차아파트 201-103김봉우, 김옥환	-		

9	공주시 중학동	167	248.3	248.3	248.3	167-119	4.9	대	4.9	공주시중학동167 김경희	근저당권자 공주시신관동587-20 합동새마을금고	
10	공주시 중학동	167-3	206.0	206.0	206.0	167-120	5.4	대	5.4	공주시중학동167-3 조영구	-	
11	공주시 중학동	167-36	67.4	67.4	67.4	167-121	8.1	전	8.1	공주시중동92-1 이종희	가압류 공주시신관동604-7 대한기독교감리교회	
12	공주시 중학동	167-89	0.6	0.6	0.6	167-89	0.6	전	0.6	공주시옥룡동주공아파트 206동1204호전동철	-	
13	공주시 중학동	167-95	20.2	20.2	20.2	167-95	20.2	대	20.2	공주시옥룡동주공아파트 206동1204호전동철	-	
14	공주시 중학동	167-96	47.4	47.4	47.4	167-96	47.4	대	47.4	반죽동 339 이정숙	-	
15	공주시 중학동	167-99	54.1	54.1	54.1	167-99	54.1	전	54.1	반죽동 339 이정숙	-	
16	공주시 중학동	167-100	13.3	13.3	13.3	167-100	13.3	전	13.3	공주시옥룡동주공아파트 206동1204호전동철	-	
17	공주시 중학동	166-1	99.0	99.0	99.0	166-3	74.5	임	74.5	공주군의당면덕학리553 김봉우	-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소유자	비고
1	군주시 중학동	165-1	주택	벽돌함석	81.4	중학동 165-1 유봉출	
			창고	블럭스레트	9.8		
			화장실	목조스레트	1		
			가추		23.68		
			가추		2		
			대문		1		
			바닥	블록 및 콘크리트	53.55		
			담장		23.5		
			장독대		1		
			상수도		1		
			장미		1		
			감나무		1		

2	공주시 중학동	163-2	주백	블럭스레트	21	m ²	중학동 163-2 김영복(원부중)	
			창고및화장실	블럭스레트	5	m ²		
			장독대		1	식		
			바닥	콘크리트	4	m ²		
			대문		1	식		
			담장		3	m		
3	공주시 중학동	165-14	대문			m ²	중학동 165-14 이봉금 (최금식)	
			담장		8	m		
			바닥	콘크리트 화단포함	20	m ²		
			감나무		1	주		

4	공주시 중학동	165-15	주택	벽돌함석	48.8	m ²	중학동165-15 권오찬
			가추	목조함석	8.85	m ²	
			가추	목조함석	9.9	m ²	
			가추	목조함석	9	m ²	
			장독대		1	식	
			상수도		1	식	
			대문		1	식	
			담장		6	≡	

5	경기도 주천시 중학동	165-16	주택	벽돌스라브	84.6	m ²	중학동184-1 지제일
			창고	목조췌라이트	1.56	m ²	
			가추		8.64	m ²	
			계단및 보일러실		6.48	m ²	
			창고	벽돌스라브	8.7	m ²	
			베란다		27.9	m ²	
			관정		1	식	
			상수도		1	식	
			화단		1	식	
			담장	블록	11	m	
			바닥	콘크리트	32	m ²	
			대문		1	식	
			감나무		1	주	
			복숭아		1	주	
			자두나무		1	주	
			사과나무		1	주	
			소나무		2	주	
			연산홍		2	주	

6	공주시 중학동	166외	주벽	목조함석	104.4	m ²	경기도수원시팔달 구중부대로223번길 92,206동304호(우 만동, 주공아파트) 김옥환 (김양식)
			화장실	벽돌스라브	8.75	m ²	
			가추		10.8	m ²	
			가추		9.8	m ²	
			담장		14	m	
			바닥	콘크리트	20	m ²	
			관정		1	식	
			상수도		1	식	
			장독대		1	식	
			계단		1	식	
			슬걸이		1	식	
			대문		2	식	
			목단		1	주	
			연산횡		2	주	

7	공주시 중학동	166	주벽	벽돌함석	51.6	m ²	공주시의당면 덕학리553 김봉우	
			주벽	벽돌함석	21.6	m ²		
			가추		9.5	m ²		
			가추		4.8	m ²		
			가추		13.64	m ²		
			담장		8	m		
			대문		1	식		
			상수도		1	식		
			장독대		1	식		
			바닥	콘크리트	18	m ²		

8	공주시 중학동	167-3	화장실	벽돌스라브	14	m ²	중학동167-3 조영구	
			담장		8	m		
			철재계단		1	식		
			차양	벽산지붕	20	m ²		
			능수화	철파이프시설물 포함	2	주		
9	공주시 중학동	167-100	주방및화장실	블럭스레트 모수비포함	28	m ²	공주시중학동 167 김경희	
			담장		14	m		
			바닥	콘크리트	28	m ²		
			대문		1	식		

10	경주시 중학동	167-46	화장실			2	m ²	중학새마을1길 15(중학동) 이정숙	
			대문			1	식		
			바닥	콘크리트및 경계석		71	m ²		
			석탑			1	식		
			연산홍			11	주		
			무화과			1	주		
			복숭아			1	주		
			앵두			1	주		
			장미			1	주		
			오염송			2	주		
			헛개나무			1	주		
			보리수			1	주		
			향나무			2	주		
			수국			2	주		
11	경주시 중학동	163-3	보일러실	목조썸라이트		2.7	m ²	오종수	
			대문			1	식		
			담장	블록		6	m		

▣ 공주시 고시 제2013-9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 제 내 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 형	등급	면적 (㎡)		
용 성 천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침수위험	나	1,114,400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해소	2006.3.2
어 천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 청양군 목면 안심리	침수위험	나	430,000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해소	2006.3.2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 1부(재난관리과 비치)

2013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7 월 15 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없어지고,
-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 1. 9)됨에 따라 그에 맞춰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
 - 지급금액 : 월 25만원
 - 지급대상 : 보건진료원(보건진료직, 별정직,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인사담당관실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2069 FAX : 041) 840 - 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 의 지급구분표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보건진료직렬(별정직, 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월 지 급 액	비 고
보건진료소 근무자	250,000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생략 1. · 2.(생략) <u><신 설></u>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u>3.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등 : 별표4의 지급 구분표</u>

공주시 공고 제 2013-974호

「공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제11495호, 2012.10.22), 시행(2013.4.23)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 변경

- 자연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당일 도착에 한함), 팩스
- 제출처 : 공주시 재난관리과 재해대책담당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 전화 : 041-840-8648
 - FAX : 041-840-2696
-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4. 참고사항

- 「공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조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방지하는데 있어”를 “방지하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연재해 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형상”을 “모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 침수 수위로서”를 “따른 침수 수위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이를 함께”를 “함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를 고시하여야”를 “고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중 “병행”을 각각 “함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의한 직·간접적인”을 “따른 직접·간접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병행”을 “함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간접적인”을 “직접·간접적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공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 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 재해 <u>위험지구</u> 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 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위험개선지구</u> ----- ----- ----- ----- ----- -----.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자연 재해 <u>위험지구</u> 에서 풍수해로부 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를 <u>방지하는데 있어</u>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불 편 최소화, 자연재해 위험 경감 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 ---- <u>위험개선지구</u> ----- ----- ---- <u>방지하고</u> , ----- -----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 <u>위험지구</u> ”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 1항에 따라 시장이 침수위험 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	제3조(정의) ----- ----- <u>뜻은</u>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 1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
·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
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
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
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
는 고가의 인공구조물에 설치
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
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
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
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
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

2. -----

----- 그 밖에 -----

-----.

3. -----

----- 모양 -----
-----.

4. -----

-- 따른 -----
-----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5.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6.·7. (생략)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5. -----

---- 등으로 -----

-----.

6.·7. (현행과 같음)

8. -----
-----위험개선지구-----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위험개선지구-----

-----.

----- 함께-----

하다.

제5조(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시장은 주민이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② (생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건축 등 자연재해 위험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

----- 고시하여야
-----.

② -----
----위험개선지구-----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

-----.

1. -----

----- 함께--
-----.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앞뒤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생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

2. -----
---- 함께-----

3. -----위험개선지구 -----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

-----.

1. -----

----- 따른 직접·간접
적인 -----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
2. 붕괴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2. ----- ----- 함께----- ----- ----- --
3. 자연재해 <u>위험지구</u>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3. ----- <u>위험개선지구</u> --- ----- ----- -----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과 관련하여 <u>직·간접적인</u>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다.	② ----- <u>직접·간접적인</u> ----- ----- ----- ----- -----.

공주시 공고 제2013-975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 특히, 2009. 2. 20.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예규 209호)를 폐지하고 이 규칙으로 대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2조)
- 적용 범위, 수립대상(안 제3조, 4조)

- 2009. 2. 20.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충청남도 고시 2009-6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제5조)
 - 심의에 관한 사항 및 타법령 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심의 절차 이행
-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10조)
 - 관리계획 방향, 높이, 형태, 배치 등
- 조망점 및 시곡면 분석과 대안제시(안 제11조 내지 16조)
 - 조망점 선정기준, 높이, 주요 조망대상, 시곡면 분석, 3개의 대안제시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공주시장(도시재생과장)
 -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 840-8550 팩스: 041)840-2166

4. 참고 사항

- 가. 붙임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나.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고고도지구 해제 지역”이란 충청남도 고시 제2009-6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주동길이”란 건물 앞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 공동주택으로써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쪽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절곡형 공동주택에서의 각 건물의 조합각도는 12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 앞면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5. “조망차폐율”이란 건축물의 입면적 합계를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6. “시곡면 분석”이란 시각의 시점과 대상을 잇는 단위평면을 시선의 방향으로 연결하여 공간상에 펼쳐지는 가상의 3차원이 형성되는데 이를 시곡면이라 하며, 시곡면상에 건축물의 튀어나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녹지요소”란 사업대상지 배후의 산지 및 사업대상지와 인접하고 있는 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공공공지·공개공지를 말한다.
8. “저층건물 밀집지역”이란 사업대상지 원경의 범위 내 4층 이하의 건축물이 30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단독주택이 80퍼센트 이상 분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조례 제51조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을 신축 할 경우 수립 되는 도시관리계획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 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립 대상) ① 제3조의 도시관리계획 방안의 수립대상은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대상지가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의 경계선에 일부분이 포함되면 도시관리계획 방안 수립대상이며, 모든 용도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높이 16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의 경계선은 공주시에서 제작관리하고 있는 1/1,000 ~ 1/1,200 수치지형지적도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을 신축시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방안이 이 규칙의 개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

의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및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구는 위원회 심의 이전에 타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방안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방안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방안의 기본방향) ①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16m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관리계획 방안은 공주시 경관기본계획 등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고려한 산지, 구릉지, 사적지 및 시가지에서의 조망경관 확보,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건축 시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경계의 도로폭, 연접한 주변지역의 조망권, 일조권, 통풍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사업대상지의 자연환경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입체형태와 가로 및 공공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계획한다.

④ 가로경관의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서 도로변에는 가로공원의 조성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사업대상지의 원경의 범위에 승인된 사업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건축계획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 계획) ① 건축계획은 주변지역과의 경관상 조화 및 건축물의 위압감해소,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형태를 테라스형, 저층·중층·고층의 혼합형, 저층 고밀의 형태 등 지형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 또는 개념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의 높이) ① 건축물의 높이는 제15조의 시곡면 분석에 따라 결정한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서 개발규모, 건축물의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되, 사람 중심의 스케일과 주변지역 및 지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연속성, 식별성, 통일성, 시각 통로 확보, 주요 결절부 랜드마크 형성 등 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방안 목표에 맞는 계획을 유도한다.

③ 저층건물 밀집지역과 인접된 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층수변화에 따른 튀어나온 경관 및 부조화를 방지하도록 사업 대상지 경계 부분의 주동의 최고높이는 40m 이하(옥탑층 등 그 밖의 구조물의 높이를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폭 25m 이상인 도로(주동이 접한 대지길이의 1/2 이상이 폭 25m 이상이어야 한다), 공원 및 완충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이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건축물의 형태) ①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며, 탑상형·복합형·유선형 등 건축물 형태를 다양화하여 아름다운 공동주택 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조망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타워형을 권장한다.

② 주동의 형태는 적절하게 튀어나오게 하거나 또는 후퇴하도록 하여 입체감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저층부 보행자 공간에서 시각회랑 확보를 위해서 필로티 등을 설치한다.

- ③ 각 동마다 입면의 튀어나옴, 후퇴 등의 변화를 주도록 하고, 발코니는 돌출형이나 후퇴형 등 입체효과를 유도하며, 개방형과 폐쇄형을 적절히 배치하여 입면의 변화를 주도록 한다.
- ④ 상업용 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앞면부에는 건물후퇴를 유도하며, 건물과 건물사이 빈터에는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잔디, 화단, 벤치 등을 배치)하여 보행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한다.
- ⑤ 중심 가로변의 신축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슬래브를 지양하며, 옥상 녹지화 등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10조(건축물의 배치) ① 공동주택의 주동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의 입지특성,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단지의 환경적 측면(소음, 분진 등)을 고려하여 보조간선도로 이상 도로와는 될 수 있으면 직각으로 배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서 보조간선도로 이상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주요 조망점에서 건물들이 모여 시각적 차단벽을 형성하지 않도록 연결하는 건축물의 병렬배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15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주요 조망점에서 멀리 배경이 되는 조망대상에 가깝게 배치하도록 한다.

제11조(조망점 선정기준) ① 조망점은 사업대상지를 둘러싸는 주도로와 보조도로를 기준으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각각 4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조망점은 근경(200m 내외) 및 원경(500m 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조망점 선정은 선적 조망점 및 점적 조망점으로 구분하여 공주시 경관기본계획 등 별표 2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주변의 주요 도로 및 산책로,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관을 조망하는 장소, 가장 좋은 조망기회를 제공하는 장소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라 선정하고,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조망점의 높이) 조망점의 높이는 사람의 눈높이(1.5m)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 건축물로 가려져 조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망점 높이를 최대 4층(16m) 이내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주요 조망대상) 주요 조망대상은 공주시 경관기본계획, 별표 4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 또는 여기에 일정 높이를 더한 가상의 경계선을 말하며, 그 높이는 7부 능선으로 한다. 다만,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이 없는 산지의 경우는 현재의 스카이라인을 말하며, 인접된 능선에 따라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그 능선을 말한다.

제14조(시곡면 분석) ①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시곡면 분석을 실시하고, 제안된 건축계획이 시곡면상에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망점 명칭 및 위치
2. 현황의 시곡면 분석도 및 계획(대안)안의 시곡면 분석도
3. 시곡면 분석표
4. 주요지점별 지반고(GL)와 건축높이의 분석도

② 시곡면 분석은 선정한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시곡면상에 될 수 있으면 건축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 제15조(대안 제시) ①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관리계획 방안 수립기준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되, 용적률과 건폐율의 변화를 통해 층수에 대한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건의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분석결과가 포함된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③ 이 규칙의 기준 외에 풍향, 지형분석, 통경축 확보 등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따른 관련법령 제정 시 건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도시관리 계획 방안의 적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검토 기준과 분석방법 및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제출 기준) ①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사업대상 지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조망점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과의 도시경관 부조화를 미리 방지하고, 배후 산지와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통경축 확보 여부에 대한 시곡면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원경의 범위까지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합성 사진 (사진, 도면 등) 등을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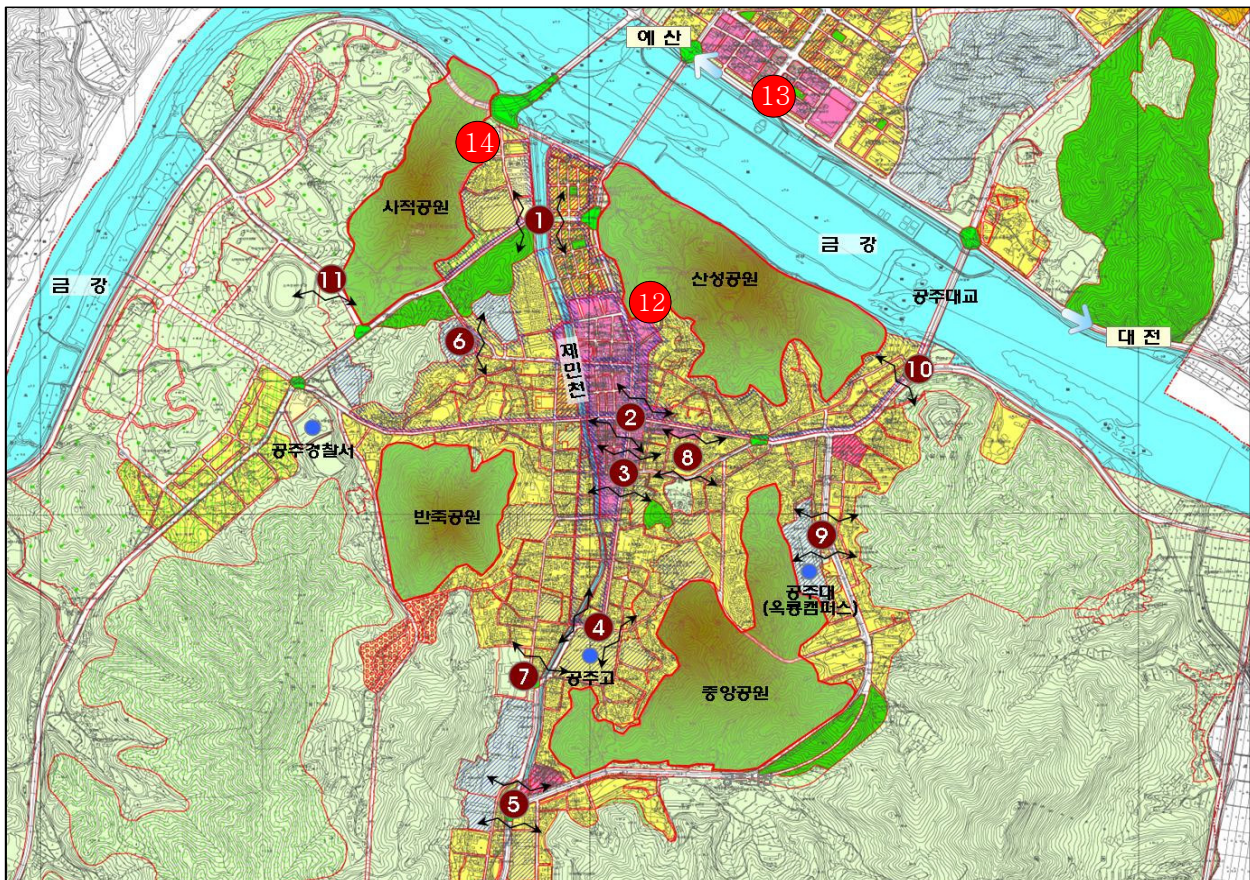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타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요 조망점(제10조제3항 관련)

번호	위 치	번호	위 치
①	제민천 왕릉교	⑧	중동성당
②	중동사거리(큰사거리)	⑨	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 정문
③	박물관사거리(작은사거리)	⑩	옥룡동사무소 앞 교통광장
④	공주고등학교 정문	⑪	문예회관 앞
⑤	금학지구대 앞 삼거리	⑫	산성공원
⑥	교동초등학교 정문	⑬	신관동(금벽로: 공주대교~연미터널)
⑦	공주시청 정문	⑭	정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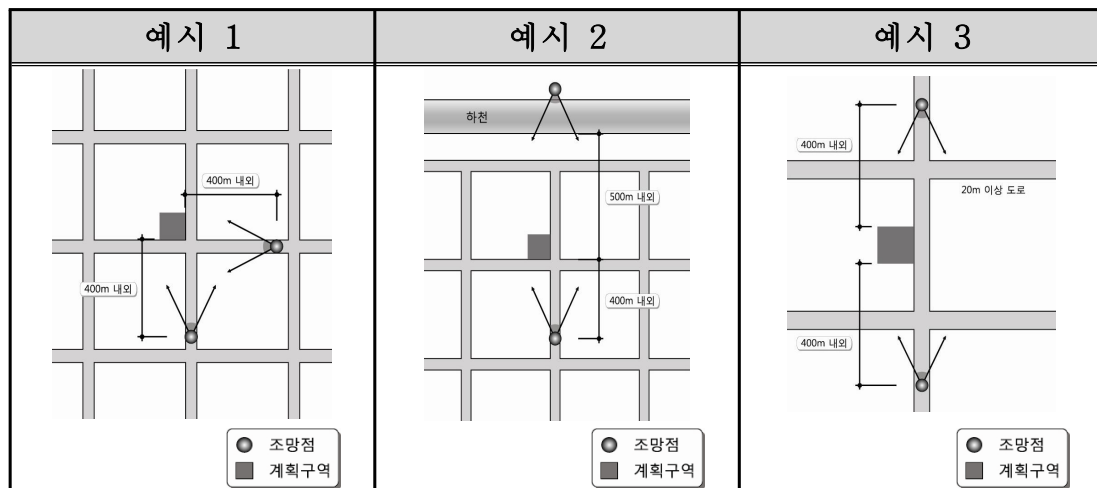
【별표 2】

조망점 선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

예시1) 계획구역이 도로의 가각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계획구역과 연결된 도로상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예시2) 주요하천(금강, 제민천)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주요하천 건너편 및 주요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서 각각 1개소 이상 지정한다.

예시3) 20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계획구역의 진입방향으로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별표 3】

건축계획 기준(제12조제1항·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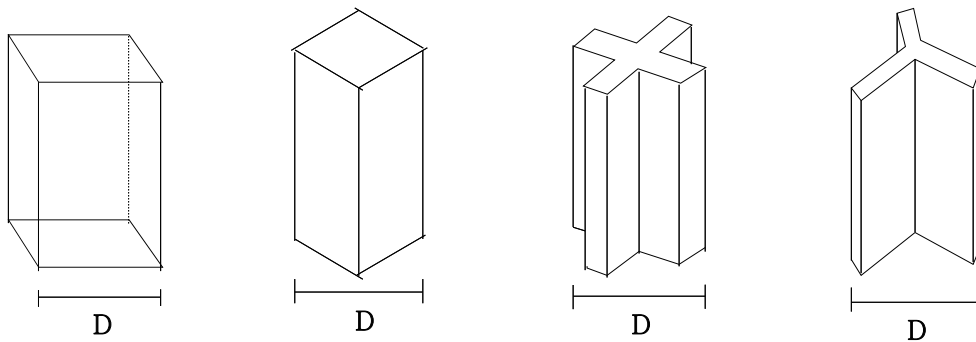
1. 주동길이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에는 6호 연립 또는 60m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가.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 해소 / 일조 및 조망확보를 위한 기준

- 주동길이 = 조망축 방향 건물 각 동의 폭(D) : 모든 건축물의 주동길이는 입면의 최대길이임
- 주동길이 기준 : 4호 연립 이하 / 50m 이하 [다만,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 6호 연립 또는 60m 이하]

나. 주동길이 산정방법

- 주동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의 건물로써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쪽의 길이를 말함 (다만, 절곡형 공동주택에서의 각 건물의 조합각도는 120도 이하가 되어야 하며, 초과시는 각 건물 전면부 길이의 합산으로 산정함)



2. 조망차폐율은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60퍼센트 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이거나 평균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가. 주요간선도로변 및 녹지축변으로의 개방감과 통경공간 확보를 위한 기준

- 조망차폐율 = (주동의 투영입면적의 합 ÷ 조망면적) × 100
- 적용예시(산식) : $[(a+b+c+d+e+f+g+h) \div (A \times B)] \times 100$

A : 단지내 가장 높은 주종의 높이(옥탑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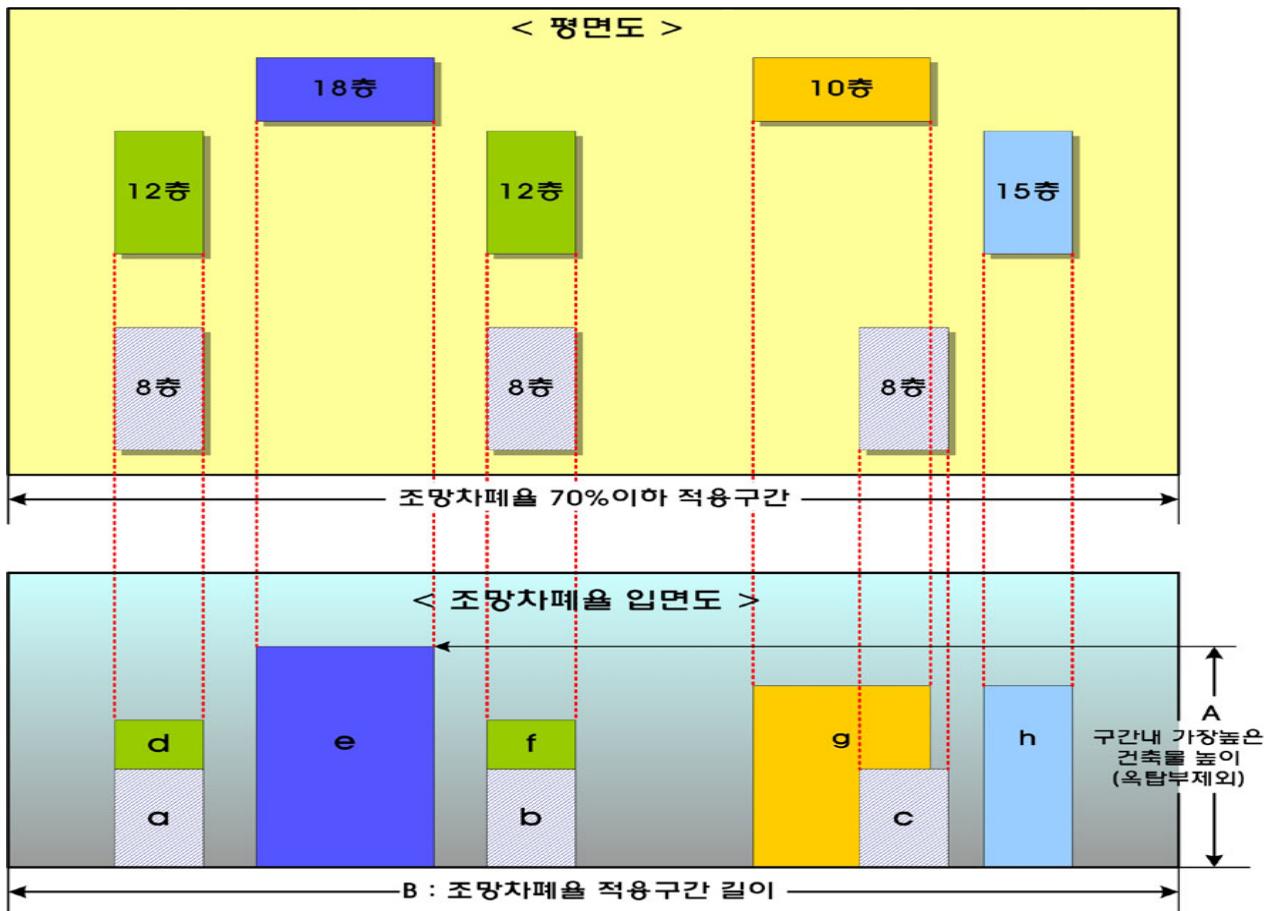
B : 단지내 최장길이

○ 적용기준

- 60퍼센트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미만 이거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 70퍼센트 이하

나. 조망차폐율 산정예시도

○ 조망차폐율 : 건축물의 입면적의 합계를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시곡면분석에서 제시된 조망점이 위치한 도로에서 산정함



3. 주변지역과의 단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가. 지형변형비율 = (절·성토 면적 ÷ 대지면적) × 100

나. 적용기준 : 30퍼센트 이하

○ 절·성토 면적은 종단면으로 보아 6m 이상 절·성토한 면적을 말한다.

【별표 4】

경관자원유형 및 조망대상(제14조 관련)

경관자원유형	조망대상
산악 및 구릉지 경관자원	산성공원, 사적공원, 반죽공원, 중앙공원
수변경관자원	제민천, 금강
역사보존경관자원	공산성, 당간지주, 송산리 고분군, 충남역사박물관
시가지경관자원	원도심(중동사거리), 응진로, 무령로, 봉황로, 왕릉로

【별표 5】

심의도서 작성방법(제16조제2항 관련)

1. 대상지 개요

- 대상지의 주변여건과 광역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포함

2. 경관자원 분석

- 1) 「공주시 경관기본계획」 등 주변지역의 경관계획방향 등 검토
- 2) 주요 경관자원현황

3. 계획의 방향 및 조망점 선정

- 1) 경관자원분석을 통한 계획방향 제시
- 2) 조망점 선정
 - 조망점 위치 및 선정사유 제시

4. 대안 수립

- 1) 대안의 개요
- 2) 대안별 계획특징 분석

5. 심의기준 및 검토제시자료 분석

- 1) 주동길이
- 2) 조망차폐율
- 3) 시곡면분석
- 4) 경관시물레이션(합성사진 포함)
- 5) 조감도 및 현황사진(위성 또는 항공사진-대상지 주변 약 200m 지점까지 포함)
- 6) 투시도, 배치도, 기본평면도

6. 분석결과 종합 및 계획 선정

※ 상기 작성기준은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수립하는 자가 계획(안)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항목과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가. 규제사무명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나. 구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장	
다. 소관부서명	충남 공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 840-8550)					
라.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규제수	13조항
마.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규제심사 결과 ○ 대상 조항 - 제4조(수립대상) -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제6조(도시관리계획 방안의 기본방향) - 제7조(건축계획) - 제8조(건축물의 높이) - 제9조(건축물의 형태) - 제10조(건축물의 배치) - 제11조(조망점 선정기준) - 제12조(조망점의 높이) - 제13조(주요 조망대상) - 제14조(시곡면 분석) - 제15조(대안 제시) - 제16조(자료제출 기준)					
	○ 검토결과 - 위 규칙 규제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동 시행령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의 법률에 의거 제정됨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근거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 제34조(도시·군 관리계획의 정비)
 - 령 제28조(도시·군 관리계획의 정비)
 - 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제1항제2호(고도지구)
 - 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령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업무)
- 2) 도시계획조례(개정중: 개정전은 별표4,8,9에서 運用)
 - 조례 제51조(最高高度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 3) 주택법
 - 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제1항제5호

나.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의 내용

- 1) 종전규제
 - 「2010년 공주도시관리계획」 174페이지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변경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별표4, 8, 9에 의거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 제정운용(2010. 9. 15. 예규184호)
- 2) 신설(변경)내용 : 종전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 내용 受容
 - 제4조(수립대상)
 -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공동주택 건축시에는 주택법 제17조에 의거 국토계획법 제30조, 56조, 86조, 88조가 의제됨
 -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심의 통합지침 운용(위원회 심의)
 - 제6조(도시관리계획 방안의 기본방향)
 - 제7조(건축계획)
 - 제8조(건축물의 높이)
 - 제9조(건축물의 형태)
 - 제10조(건축물의 배치)

- 제11조(조망점 선정기준)
- 제12조(조망점의 높이)
- 제13조(주요 조망대상)
- 제14조(시곡면 분석)
- 제15조(대안 제시)
- 제16조(자료제출 기준)

다. 규제신설의 필요성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4조(高度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거 1997년 공주시 강남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196,530㎡에 대하여는 건축높이 25m이하로, 일반주거 및 근린상업지역내 2,555,310㎡에 대하여는 건축높이 16m이하로 건축높이를 제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음
- 2)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2009. 2.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의 규정에 의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아 최고고도지구 일부지역을 완화, 유지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高度지구를 解除. 단 고도지구 해제지역 건축물 등에 대한 완화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및 건축물 등 마스터플랜 마련, 이를 반영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후부터 적용이라는 단서를 첨부
- 3) 이에 공주시는 2009. 7. 1.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별표4, 8, 9)을 하였고 그 근거로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2010. 9. 15 예규 184호)을 제정 운용하여 오다
- 4) 2013년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별표4,8,9에 삽입된 항목을 삭제하고 운용중인 지침을 폐지함과 동시에 개정하는 조례 제51조(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항목을 신설하여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규칙을 제정 운용하여 행정의 일괄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함.

라.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1) 우리시는 백제의 古都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고층건물의 입지는 公州 古都의 역사성과 상징성 등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역사문화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정체성 확립과 이를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복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固有의 역사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며,
- 2) 우수한 景觀을 보전하고자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 향유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은 충분함.

마. 규제의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규제의 대체수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정과 동시에 기존예규(184호)의 폐지 계획으로 중복성 없음

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시공계획에 대한 심의·합리적인 설계방향 제시·유도 등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사. 규제 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 2009. 2. 20.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한정하고 건축계획,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태, 건축물의 배치, 조망점 선정기준, 조망점의 높이, 주요 조망대상, 시곡면 분석, 대안 제시, 자료제출 기준등을 정함으로서 객관성과 명료성을 확보하였음.

아. 규제 집행의 적정성

- 규제대상으로 분류된 분야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규제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공주시 공고 제2013-984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원회 운영 및 의결방법 서면심의 사안, 소위원회 구성방법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 및 의결방법 규정(제2조, 제6조)

나.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제3조)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 제시(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주시 문화재과

주소 :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20 우편번호 : 314 - 050

전화 : 041) 840 - 8229

FAX : 041) 840 - 265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서면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3명 이내, 문화재·도시계획·경관 전문가 위원 중에서 4명 이내를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항

2.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전문가 의견) ① 위원회 심의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도 보존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단은 문화재,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출석이나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의결방법 등) ① 의안은 원안가결·조건부 가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결의 방법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명투표지에 따른 기명투표 중에서 정한다.

제7조(제척·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원의 위촉) 민간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명 투 표 지

20xx년도 제○차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20xx. 00. 00)					위원 ○○○ (서명)	
안 건 명	가결		부결	보류	접수	의 견
	원안	조건부				
《심의사항》						
1.						
2.						
3.						
4.						
《검토사항》						
5.						
6.						
《보고사항》						
7.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20xx년도 제○차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심의)
사항

(안건 명)

[illegible]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illegible]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m²]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자 료

20xx년도

제○차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일 시 : 0000. 00. 00(요일), 00:00 ~ 00:00

□ 장 소 : ○○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심의사항

안전번호 고도 (연도)-(차수)-(연번)

1. (안전 제목)

가. 제안사항

○

나. 제안사유

○ (안전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 소 재 지 :

○ 지 정 일 :

○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

○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마. 참고사항

○

위 축 동 의 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본인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위축에 동의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성 명 : 0 0 0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본인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위 축 장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귀하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의에 따라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xx.00.00 ~ 20xx.00.00)

20xx년 월 일

공 주 시 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